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62
----------	-------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박형수 · 구자근 · 서지영  
백종헌 · 이달희 · 안철수  
김대식 · 고동진 · 안상훈  
조지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교부 의무를 규정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 심사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의료자문서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다른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일부 사례를 통해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원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졌지만, 현행법상 의료자문 내용이 피보험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자문 결과의 진위나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의뢰한 경우, 회신받은 의료자문서의 원본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이를 열람하

거나 사본을 교부받도록 하여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등).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3절에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의료자문서 보존 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제185조에 따른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회신받은 의료자문서의 원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는 제1항의 의료자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존, 제2항에 따른 열람·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9조제7항에 제11호의3 및 제1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제10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자문서 원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의4. 제10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자문서 보존 및 열람·교부의 적용례) 제103조의2의 개정 규정은 보험회사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 13. (생략)

<신설>

14. ~ 21. (생략)

⑧·⑨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1의3. 제103조의2제1항을 위반

하여 의료자문서 원본을 보존

하지 아니한 자

11의4. 제103조의2제2항을 위반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에 따르

지 아니한 자

12. ~ 21. (현행과 같음)

⑧·⑨ (현행과 같음)